

문서번호	세무과-100638
결재일자	2015.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보도여부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과장	기획재정국장
최지숙	代최지숙	代김시현	11/05 이상형
협 조			

2015년 세외수입
 현년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계획

2015.11.5.

강 북 구

「2015년 세외수입」

현년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계획

2015년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됨에 따라 세외수입 현년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이월체납액 감소 및 세입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추진 개요

추진배경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12.31일로 단축됨에 따라 세외수입 현년도 체납액 징수기간이 2개월 단축되어 징수율 하락 예상됨.
-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는 등 현년도 체납액 징수 강화활동 조기시행 필요.

현년도 체납 정리 목표

- 시세외수입 체납 징수목표액 : 23백만원 (부과액의 97.8%징수)
- 구세외수입 체납 징수목표액 : 271백만원 (부과액의 95.0%징수)

(9월말현재, 단위:백만원)

구 분	목표 징수율	부 과	징 수	결 손	체 납	징수율	2014년 결산징수율
합 계	95.2	19,050	17,843		1,207	93.6	92.0
시세외	97.8	1,409	1,355	-	54	96.2	97.6
구세외	95.0	17,641	16,488	-	1,153	93.5	91.6

징수 현황

(9월말 현재)

시세외수입 현년도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 과	징 수	결 손	체 납	징수율	채 권 확보율	주요부서
시 세외수입	1,409	1,355	-	54	96.2	2.4	
경상적 세외수입	1,363	1,326	-	37	96.6	-	
재산임대수입	21	21	-	-	100.0	-	
도로사용료	1,324	1,289	-	35	96.6	3.7	건설관리과
기타사용료	18	16	-	2	91.0	-	건설관리과
임시적 세외수입	46	29	-	17	17.0	-	
재산매각수입	8	3	-	5	37.5	-	재 무 과
도로변상금	38	26	-	12	67.6	-	건설관리과

구세외수입 현년도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 과	징 수	결 손	체 납	징수율	채권 확보율	2014년 결산징수율
구 세외수입	17,641	16,488	-	1,153	93.5	27.6	91.6
경상적 세외수입	13,565	13,499	-	66	99.5	-	99.6
사용료수입	5,817	5,752	-	65	98.9	-	99.1
재산임대수입 등	7,748	7,747	-	1	99.9	-	99.9
임시적 세외수입	4,076	2,989	-	1,087	73.3	-	76.5
재산매각수입	1,081	1,043	-	38	96.5	-	98.0
과징금및과태료	1,946	937	-	1,009	48.2	31.6	60.3
부담금,기타수입	1,049	1,009	-	40	96.2	-	92.3

■ 구세외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부서별 체납액 현황

(9월말 현재, 단위: 천원)

부 서	체 납 액	체 납 주 요 세 목
교통행정과	577,861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재 무 과	106,941	공유지 변상금
주 택 과	88,122	건축이행강제금, 시유변상금
푸른도시과	55,189	개발제한구역이행강제금, 자연공원법위반과태료
부동산정보과	44,077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
문화체육과	29,950	노래연습장과징금,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과징금
건설관리과	25,184	도로변상금
디자인건축과	24,657	건축이행강제금
건강증진과	16,481	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
지역경제과	14,949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과징금
주차관리과	6,953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태료

II 일제정리기간 운영 추진

- 일제정리기간 : 2015. 11. 5 ~ 12. 31
 - 자진납부 기간 과 집중 징수활동 기간으로 나누어 운영
- 운영대상 : 시세외수입(재무과, 건설관리과)
구세외수입(체납 상위 11개부서)
- 주요 징수활동
 - 세외수입 체납자 재산압류, 공매 등 집중 체납처분 시행
 - 과태료 체납자 행정제재 이행
 - 무재산자 결손처리 등 체납정리 이행
 - 주기적 실적 점검 등

세부추진계획

■ 자진납부 기간('15.11.5 ~ 11.19) 추진사항

- 독촉고지서 및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실시
 - 독촉고지서 발부기한이 납부기한 다음날로부터 50일이 경과한 경우에도 재산압류를 위해 반드시 독촉고지서 발부
- 행정제재 등 집중 징수활동 대비 사전준비
 - 체납자 재산압류를 위한 부동산, 차량 등 각종 재산조회 실시
 - 압류재산 공매 및 추가압류 등을 위한 채권순위 분석
 -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 대상 추출 및 사전예고 실시
- 오류 납부자 등 자료 정비
 -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 납부자 정보 오류 정비
 -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 지역서비스 → 기본업무모음 → 부서별처리대상업무조회 → 납부자번호 오류조회
 - 정상적인 납부자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부과취소 처리후 자료정비 재부과
 - * 부과전 사망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확인 불가능 등

■ 집중 징수활동 기간('15.11.20 ~ 12.31) 추진사항

- 체납자 재산압류를 통한 채권확보 철저
 - 부동산·차량·예금 등 각종 채권 압류 추진
(부동산 재산조회 현행화 11월 둘째주 예정)
 - 대상 : 재산조회를 통한 재산소유자 및 압류실익이 없는 기압류재산 소유자,
채권확보가 누락(예: 압류후 차량 말소)된 재산소유자

- 적극적 압류재산 공매 실시 및 배당금 관리 철저
 - 압류후 체납자의 납부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압류채권 순위 조사하여 공매처분 실익 판단 후 공매 추진
- 고액체납자 수시 전화 독려 및 집중관리
 - 대상 : 100만원 이상 194건 526백만원
- 결손처분 일제정비 등 사후관리 철저
 - 대상
 - 체납처분 종결되고, 총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할 때
 -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 사후관리 : 결손처리된 세외수입금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재산조회 실시하고, 신규재산 발견시 즉시 결손처분 취소 및 압류 실시

IV

행 정 사 항

- 일제정리기간 운영 철저 (11.5~12.31)
 - 독촉장, 체납고지서, 납부안내문 등 일제 발송
 -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 및 무재산자 결손처분 실시
 - ※11월중 시 세무과에서 정리실태 이행상황 점검 예정
- 일제정리기간 징수실적 제출
 - 매월 말일 기준 현년도 체납액 징수실적 제출 (제출서식 첨부)
 - 1차 제출 : 2015.12.15(화)
 - 2차 제출 : 2016. 1.13(화) -